

# 2019년도 『인권영향평가』 결과 보고서

2019. 12. 26

국토연구원

## **-목 차-**

### **I . 인권경영 추진 개요**

### **II . 인권경영 추진결과**

#### **1. 인권경영기반 구축**

#### **2. 2019년도 국토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**

#### **3. 2019년도 국토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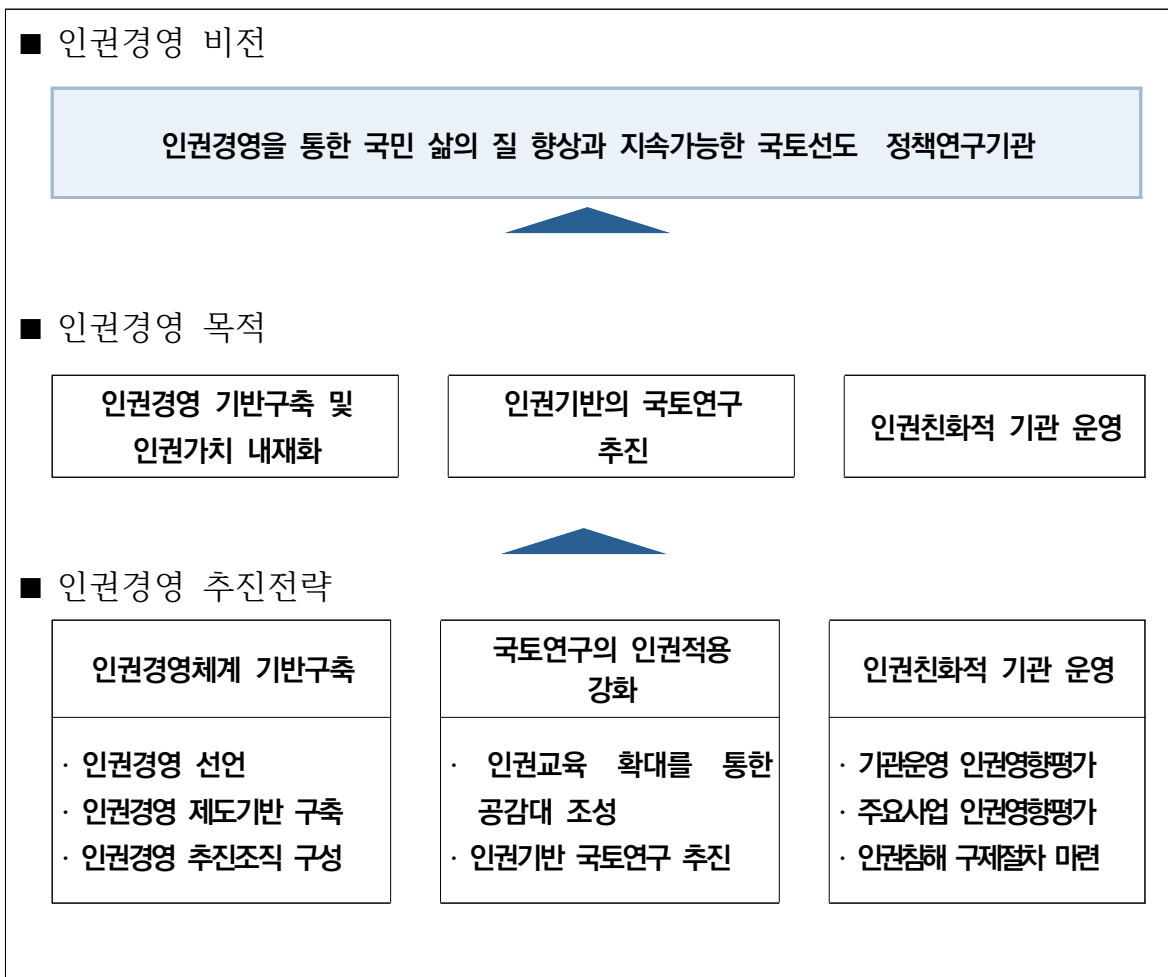
# 1. 인권경영 추진개요

## □ 도입 배경

- 인권 중시 국정철학에 따라 인권경영체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, 국토연구원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구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정착하기 위함

## □ 인권경영 추진

- 기 간 : 2019. 1. 1 ~ 12. 31
- 추진체계



■ 2019년 세부추진 과제

- 인권헌장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인권경영 추진의지 표명
-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
- 인권경영위원회 구성
- 인권교육 강화
- 인권요소를 감안한 연구과제 발굴·제안
- 인권영향평가 시행

## II. 인권경영 추진결과

### 1. 인권경영기반 구축

□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 구성

-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정
  - 인권경영규정(초안)을 마련하여 비상임감사 보고
  - 기획경영본부(경영지원센터장, 인재개발팀장, 총무관리팀장)와 검토
  - 인권경영 이행규정(초안) 수정 및 공람 후 원규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제정(2019. 09. 09)
- 인권경영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
  - 인권경영 목적, 개념정의, 인권경영헌장, 구체절차 등 인권경영 전반
- 인권경영위원회 구성
  - 구성일 : 2019. 10. 10
  - 위 원 : 총 8명 구성

- 역 할 : 인권경영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
- 운 영 :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

위원장	부위원장
내부위원	기획경영본부장, 노조대표, 행정지원실장
외부위원	김민우교수(고려대 인권센터), 유재운교수(공주대), 최두선원장(공공재정연구원), 최은영소장(한국도시연구소)

□ 인권경영 전담부서

- 감사실을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지정
  - 기획경영본부 팀장급으로 인권경영 TF구성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
  - ※필요 시 연구본부 및 기획경영본부, 행정실과 공동 작업반 구성

□ 인권교육

- 전 직원대상 인권교육(2019년 인권 및 갑질예방 교육)
  - 일시 : 2019년 4월 1일(월) 10:30, 강사 : 정승호

## 2. 2019년도 국토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□ 수행기간

-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기관운영인권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주요사업(주택정책분야)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현황점검 및 인권영향 요인을 분석

구 분	수행 내용	수행 일정
평가 방법	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점검표 작성	2019.10.01 ~ 2019.11.30
인권침해 식별 및 평가	부서별 팀장면담 및 체크리스트 작성 (면담조사, 현장조사, 문서 확인 등)	2019.12.01 ~ 2019.12.12

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○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

〈국토연구원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〉

분야		항목	지표 수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(30)	인권존중 정책선언	6
		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	6
		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	5
		인권경영 성과	7
		구제절차 마련	6
2	고용상의 비차별 (18)	고용상 비차별	5
		고용상 남녀 비차별	7
		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3
		외국인근로자 비차별	3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(14)	결사·단체교섭의 자유	4
		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	5
		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5
4	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 (25)	강제노동의 금지 및 노동자 보호	8
	4-1 직장 내 괴롭힘 방지	직장 내 괴롭힘 금지	7
	4-2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금지	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금지	10
5	산업안전 보장 (12)	연구원 내 안전	4
		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4
		필수장비 및 교육	1
		피해 근로자 지원	3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(10)	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	4
		모니터링 실시	2
		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4
7	저작권 보호(3)	타인의 저작권 보호	3
8	환경권 보장 (11)	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	6
		환경정보의 공개	2
		비상계획 수립	3
9	소비자(국민)인권 보호 (11)	연구결과에 대한 책임	5
		국민 사생활 보호	6
10	기타인권 보호 (9)	정보인권 보호	3
		일·가정양립	3
		모성 보호	3
10개 분야		31개 항목	143개 지표

□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점검 143개 항목 중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113개 항목이며, 보완필요 항목은 10개,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항목은 3개 정보없음 및 해당없음이 각각 12개 및 5개로서 이행율은 79.9%로 나타남

항목	예	보완필요	아니오	기타(정보없음 · 해당없음)
합계(개)	113	10	3	17
비율(%)	79.0	7.0	2.1	11.9

-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인권정책선언의 경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‘19년 최초로 인권정책을 선언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완하여야 함을 의미
- 책임있는 공급망관리의 경우 ‘19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국토연구원의 활동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도 협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
- 아니오로 평가된 항목은 환경권 보장부문으로서 내부 공기의 질 등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음, 측정 가능한 환경개선 목표설정 및 목표의 적절성을 정기 점검하지 않음 그리고 환경관련 정기적 직원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나타남
- 인권영향평가 점검항목 중에서 정보 없음은 인권경영체계의 구체절차부문으로서 인권경영 이행규정에서 인권피해에 대한 구체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어 구체절차나 구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

□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사항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국토연구원은 환경권과 관련한 환경관련 정보(내부공기 질 등)에 대한 체계적 수집·측정 가능한 환경개선 목표설정 및 목표의 적절성 정기점검·환경관련 정기적 직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이와 함께 후속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정보 없음으로 '19년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요 항목의 인권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관련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### 3. 2019년도 국토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방법

-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분야별 연구보고서가 대상임
-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서술형 보고서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- 평가내용은 연구사업 개요, 주요 제안사항관련 인권피해자 및 인권피해 내용 그리고 인권피해 회피, 축소 그리고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대상

- 2019년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주요사업은 주택·주거정책 부문이며, 2010년부터 수행한 연구과제 총 675건 중에서 주택 및 주거권 분야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69개 과제로 주택·토지, 주거복지, 부동산 등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목록을 검토하여 총 69개 과제 목록을 선정함



- 저소득층이나 장애인·청년 등 정책우선 순위가 되는 취약계층에게 인권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25개 과제를 예비분석
- 2019년 수행 및 2020년 수행예정인 주택정책 및 주거권분야 연구과제 6건에 대해 인권영향을 평가

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과제 요약

구분	과제명	인권영향평가 요지
19년	주거권 실현을 위한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	-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표명 -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면밀하게 진단
20년	인구 및 가구 변화에 따른 주거특성 변화 전망과 주거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	-인구 및 가구, 1·2인 가구, 청년가구, 고령화 정리 및 주거취약계층의 변화와 외국인 가구 포함 -학제적 분석을 통해 주거패턴 및 주거수요 예측 -소수자 주거권과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·인권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참여보장 필요
20년	취약계층을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	-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프로그램의 연계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으로 부처 간 정책 연계성 강화 -정책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주거 취약 계층 예산지원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
20년	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자의 주거안정성 강화 방안	-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포함되지 않는 반지하, 옥탑방, 고시원 및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고려 필요성 제기 -비주택의 입지특성 분석에 공간요소와 함께 문화·사회적 (사회서비스, 사회적 관계)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-인권측면 고려하여 취약계층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, 심층면접이 타당함
20년	지방도시 주거지 재생을 위한 도시·주택 정비방안	-도심공동화 방지·지연과 함께 근로소득 없는 고령가구, 저소득 주택세입자, 영세 상가세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 최소화장치 보완필요
20년	사회통합을 위한 부동산자산의 소유불평등 완화방안 연구	-소유 불평등 완화방안 연구 통해 제안되는 정책의 부담 완화 방안 필요